

1.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, 회생절차개시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었을 때
2. 채무자가 거래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때
3. 채무자가 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
제7조(위와 같다)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.
1.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강제집행, 가압류, 가처분 또는 경매신청을 받았을 때
2. 채무자가 조세채납으로 압류처분을 받은 때
3. 채무자가 이 계약조항을 하나라도 위반한 때
제8조(강제집행의 인낙) 채무자는 이 계약에 의한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.
제9조(양도담보) 채무자는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그의 소유인별지 목록 기재 물건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하였고 채권자는 이를 양수하였다.
제10조(담보의 보충 등) 채무자는 양도 담보물건의 가격이 그 원인을 불문하고 현저하게 감소되어 담보에 부족함이 생겼을 때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즉시 보충담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차용금 일부를 변제하여야 한다.
제11조(사용수익) 채무자는 양도 담보물건을 점유하는 동안 이를 무상으로